안산대학교	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19
		제정일자	2017.09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교무처 (교수학습지원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체계 수립
2. 비교과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조정
3.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질 관리
4. 기타 비교과교육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하고, 학생성공처장, 교육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